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Silver zone designation and operation

임 현 우

((주)진흥이엔씨 교통계획부 과장)

강 민 석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석사과정)

김 영 찬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권 오 근

((주)진흥이엔씨 대표이사)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관련법규
  - 2. 노인보호구역 운영현황
  - 3. 향후 적용방안
- II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자동차 1만대 및 도로연장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미국 일본에 다음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인구당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수준 또한 매우 높다.

그 중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는 1997년 이래로 교통안전사고 의식 강화 및 안전대책 실행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1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사망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4월 28일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7. 5. 1)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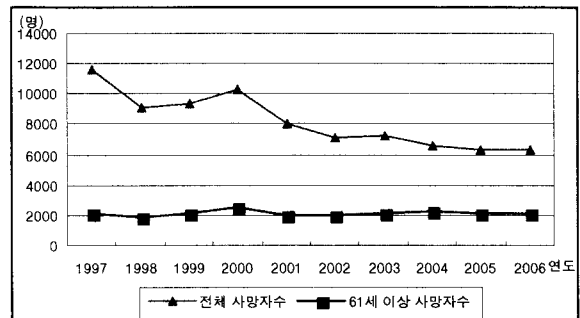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노인보호에 관련한 제법 규정들을 살펴본 다음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례 및 시범사례들과 향후 적용방안

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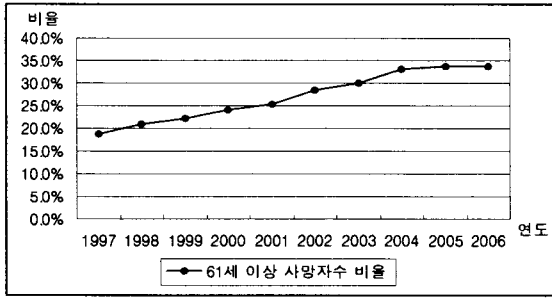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61세이상 비율
		전체	61세이상	
1997	246,452	11,603	2,175	18.7%
1998	239,721	9,057	1,888	20.8%
1999	275,938	9,353	2,066	22.1%
2000	290,481	10,236	2,455	24.0%
2001	260,579	8,097	2,043	25.2%
2002	231,026	7,090	2,025	28.6%
2003	240,832	7,212	2,168	30.1%
2004	220,755	6,563	2,183	33.3%
2005	214,171	6,376	2,151	33.7%
2006	213,745	6,327	2,136	33.8%

자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http://www.rtsa.or.kr>)



<그림 1> 전체 사망자수와 61세 이상 사망자수



<그림 2> 61세 이상 사망자수 비율

## II. 본문

### 1. 관련법규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76호]

(1) 제2조(정의)

①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②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4)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삭제 <2005.1.27>
- ② 공원
- ③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④ 공동주택
- ⑤ 삭제 <2005.1.27>
- ⑥ 통신시설

⑦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1>

(6)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7. 4

(1)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1) 제3조 (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제6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 (4)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도로교통법

#### (1)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5)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1)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 안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노인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건의 및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의·신청서에 의한다.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2.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
-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

른 조사 결과 신청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제4조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 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을 지정할 노인복지시설의 수
2.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4.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별·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제5조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따른 재정 조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6조 (신호기 등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 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신호기의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5) 제7조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별표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②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설치한다.

(6)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나 노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7) 제9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매시(每時)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제10조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경찰서장은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제11조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노인복지시설의 설립·운영자는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이 훼손되거나 손괴(損壞)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노인복지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노인복지시설의 주변 교통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 관련법규검토 종합

<표 2> 법규검토 종합

구분	1)	2)	3)	4)	5)
계획 수립	편의증진 국가종합 계획	저출산·고령 사회기본 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	-
목적	장애물 없는 사회실현을 통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제시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노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의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시
범위	포괄적	포괄적	포괄적	구체적	구체적, 직접적
비고	공원 및 개별건축물에 대한 계획	개략적인 노인생활 환경조성 시책 강구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계획	-	-

구분 :

-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7. 4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4) 도로교통법
- 5)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노인보호구역 운영현황

1) 송파구

(1) 지정현황

<표 3> 송파구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2005년)

연번	시설명	위치	비고
1	토성경로당	풍납동 503	아스콘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표지판
2	노인종합복지관	삼전동 173	
3	돌마리경로당	석촌동 258	
4	가락본경로당	가락동 14	
5	셋팡이경로당	가락동 170-4	
6	목련경로당	오금동 156	

자료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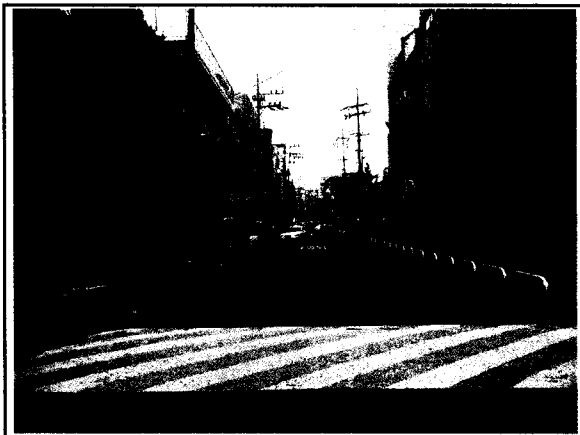
<표 4> 송파구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2006년)

연번	시설명	위치	비고
1	풍납제1경로당	풍납동 493-17	아스콘 과속방지턱 보호구역 표지판
2	윗마을경로당	마천동 373-8	
3	왕천경로당	방이동 189	
4	흥이경로당	가락동 14	
5	가락골경로당	가락동 145-10	
6	인성장애복지관	마천동 211-90	
7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삼전동 109	
8	신아재활원	거여동 251-23	
9	임마누엘재활원	거여동 251-40	

자료 : 송파구청 사회복지과

(2) 송파노인종합복지관

- ① 공사기간 : 2005. 11. 15 ~ 2006. 2.14
- ② 공사내역
  - 칼라아스콘 포장 A = 657m<sup>2</sup>, 과속방지턱 9개소, 방호울타리 30m,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4개소, 차선도색 및 기타안전시설 설치 등
- ③ 사업비 : 총 23,600천원
- ④ 현황사진



유색포장,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표지판



유색포장, 방호울타리, 표지판

<그림 3> 송파노인종합복지관 현황사진

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주 진입로가 이면도로여서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음
- 웬스로 보차 분리하였으나 보도 필요
- 불법주정차가 심하여 단속 필요

2)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 (1) 위치 : 도봉구 쌍문2동 19-12
- (2) 공사기간 : 2007. 3. 9 ~ 2007. 6. 9
- (3) 공사내역
  - 칼라아스콘 포장 A = 640m<sup>2</sup>, 보도설치 A = 85m<sup>2</sup>,
  - 칼라미끄럼방지포장 A = 230m<sup>2</sup>, 방호울타리 설치 L = 18m,
  -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2개소 설치 등
- (4) 사업비 : 총 70,000천원
- (5) 현황사진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그림 4>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현황사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① 경사구간으로 손잡이 등 안전시설 필요
- ②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혼재되어 있어 거주자 우선주차면 삭제 필요

3) 양천구 신월노인복지센터

- (1) 위치 : 양천구 신월3동 49-11
- (2) 공사기간 : 2006. 11. 22 ~ 2006. 12. 26
- (3) 공사내역
  - 미끄럼방지포장 A = 330m<sup>2</sup>,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4개소,
  - 노면표시 5개소, 횡단보도 채도색 1개소
- (4) 사업비 : 총 19,880천원

(5) 현황사진



<그림 5> 양천 신월노인복지센터 현황사진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① 표지판 시인성이 떨어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 조정 및 가로수 위치 조정 필요

4) 파주시 파주노인복지회관

- (1)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428번지
- (2)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4,179㎡
- (3) 공사기간 : 2003.9.5~2004.12.31
- (4)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기 및 구간길이

- ① 지정시기 : 2007.5
- ② 구간길이 : 약 80m

(5) 현황사진



유색포장,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유색포장, 방호울타리, 블라드, 보도턱낮춤

<그림 6> 파주노인종합복지관 현황사진

(6) 문제점

- 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미설치
- ② 보도턱낮춤 구간 경사도 심함
- ③ 블라드는 오히려 보행에 방해
- ④ 방호울타리 구간 짧음

(7) 개선방안

- 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② 보도턱낮춤 구간 경사도 조절
- ③ 블라드 제거
- ④ 방호울타리 구간 확대

3. 향후 적용방안

1) 노인보호구역 확대안

- (1)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기존시설에 대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 (2) 기존시설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요양원 등의 시설에 추가 필요
- (3) 서울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성동, 영등포, 관악 등 관내 3개 노인복지센터 주변에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 예정이 필요하다.

2) 실버타운 개발안

노인보호구역 개념을 적용시킨 실버타운을 직접 개발한다.

(1) 고령자를 위한 도로시설 정비계획

- ① 시인성 높게 차선도색 및 조명설치로 안전성 향상
- ② 인지판단 단순화를 위한 개선 및 보도턱 낮추기



<그림 7> 조명시설 및 보도턱 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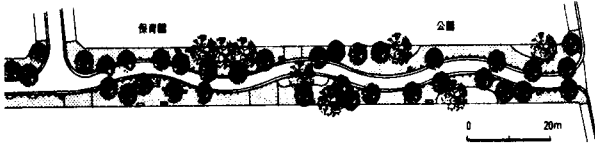
(2) 보행자동선 계획

- ①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로 보행자동선 연속성 확보



<그림 8> 보행자 동선계획

②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및 도로안전성 증대



<그림 9> 보행자를 위한 도로구성

(3) 교통안전대책

- ① 대상지내 차량출입구 주변 과속방지시설 설치
- ② 차량속도 30 km/h 이하로 규제
- ③ 안내표지, 교통표지의 문자크기를 가능한 확대하여 시인성 제고
- ④ 도로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전면포장) 설치



<그림 10> 험프식 횡단보도 및 고원식 횡단보도



<그림 11> 교통안전시설 종합

III. 결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수준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또한 매우 많다. 교통사고 사고건수 및 사망자수는 1997년 이래로 교통안전사고 의식 강화 및 안전대책 실행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61세 이상 노인인구의 사망자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사망자수 대비 61세 이상 노인인구 사망자 비율은 1997년 18.7%에서 2000년 24.0%, 2006년 33.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사망자수가 증가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4월 28일 도로교통법 제12조 2항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07. 5. 1)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반 관련 법규와 법규간의 관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살펴보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실태인 서울시 2005, 2006년 송파구 일대의 노인복지회관, 양로원 등의 시설과 양천구 신월노인복지센터, 파주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7년 서울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추가 확대 설치 및 개선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장 조사시 주변 사람들의 노인보호구역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교육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전체적으로 노인들의 보호 및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실버타운 개발계획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노인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매뉴얼 등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건설교통부, 2007. 4
- 2)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대한민국정부